## 3차 유치원 규칙 개정에 따른 세칙 규정

제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 지도에 관한 규정

제12조(생활지도 범위) ①항2호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·사용

## 【유아로부터 분리·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】

요건		분리 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>날카로운 도구, 장난감 칼이나 총, 공구, 레이저 포인터, 화학약품 등)	3일	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(유치원 보관함)	■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■ 유아로부터 물품을 받아 유치원장에게 신고 ■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 줌 ※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
2	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>술, 담배 등)			는 보관기간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조치(물품분 리보관 일지 등 활용 가능)
3	녹음 등 촬영 기능 등이 있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배의 우려가 있는 물 품(예>초소형 녹음기, 소형 바디캠 등)	3일		-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-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 줌
4	유아간 갈등 상황을 야기 할 수 있는 물품 (예>캐릭터 장난감, 고액의 현금 등)	3일		■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■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 줌
5	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 (예>교사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전자 기기 등)	3일		-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-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 줌
6	기타 교직원 협의회를 통애 소지를 금지한 물품(예>스마트 워치,태불릿 pc,스마트폰 등)등의 소지와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 유치원에서 결정	귀가 전		<ul> <li>●분리보관 사유를 알림</li> <li>※ 소지와 사용 범위 작성</li> <li>●등원하면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전원을 꺼 놓는다.</li> <li>●사용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</li> </ul>

※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고시」를 준용한다.

[시행 2023. 9. 1.] [교육부고시 제2023-30호, 2023. 9. 1., 제정.]